■ 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제조(관리)보안책임자 [ ] 면허 [ ] 갱신 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자격증 또는 면허증	등록번호 (발급번호)	
	종목 및 등급	
	계열	※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	전화번호	
	발급일	
	발급관청 (면허관청)	

「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・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제조(관리)보안책임자(면허・갱신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(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・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) 1부 2. 사진(가로 3㎝, 세로 4㎝) 3. 구 화약류제조(관리)보안책임자 면허증(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3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	

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리절차

